

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지윤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○ 인용법령 명칭이 잘못 인용된 것을 수정하며,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인용법령의 법령명 오기를 정정함(안 제4조, 안 제6조, 안 제7조)

: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
: 「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
: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○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춘 띄어쓰기 정정(안 제2조, 안 제6조제1항)

: (이하“회관”이라 한다) → 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

: 1천분의 50이상 → 1천분의 50 이상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명확한 표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안 제4조, 제6조, 제7조 등에서 인용된 관련 법령의 명칭을 정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번 개정조례안은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인용 법령의 명칭을 정확히 반영하고, ‘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’, ‘1천분의 50 이상’의 용어에 대한 띄어쓰기 정정을 통해 명확성을 제고하였음.
-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기초적인 정비 작업으로, 특별한 이견이 없음.